

[부 록]

대학 교수-학습 연구 편집 및 발간 규정

제정 : 2018년 07월 16일

최근개정 : 2019년 01월 30일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 회칙 제4장, 제10조 ⑤항에 의거하여 학술지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술지명칭)

본 학술지는 '대학 교수-학습 연구'라 칭하며, 대학 교수-학습 전반에 관한 연구를 통해 대학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치)

본 대학 교수-학습 연구 사무실은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 사무국에 둔다.

제4조 (모집분야)

대학 교수-학습 전반에 관한 연구로 타 학회지에 발표되지 않은 논문의 투고를 원칙으로 한다. 단, 소정의 심사를 거쳐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 하계워크숍,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논문은 투고 할 수 있다.

제5조 (발간횟수와 시기)

본 학술지는 연 2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발간 시기는 매해 6월 30일 / 12월 31일로 정한다.

	1호	2호
투고 마감일	4월 30일	10월 31일
발간일	6월 30일	12월 31일

제6조 (투고규정)

- ① 투고 원고는 대학 교수-학습 관련 학술논문으로 제한하며 타 논문의 내용을 표절한 경우와 타 학술지에 기 발표된 경우에는 투고할 수 없다.
- ② 투고 원고가 소정의 심사결과를 거쳐 게재되는 경우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연구자와 본 학회가 공동으로, 전송권은 본 학회에 귀속한다.
- ③ 논문 투고 시 ‘대학 교수-학습 연구’ 게재 논문 작성 요령에 맞추어 작성하여, ‘대학 교수-학습 연구 논문투고 신청서’와 저작권 활용 동의서, 표절검사지를 함께 제출한다.
(※ 표절검사 비율은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④ 논문 게재자는 공동연구 포함하여 호당 1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⑤ 논문 투고자는 소정의 심사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 ⑥ 투고된 원고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제7조 (게재확정논문)

- ① 심사결과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제시된 양식에 따라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②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은 논문은 기본 게재료 70,000원이며 연구지원비를 받아 수행된 논문은 추가 게재료 포함 140,000원을 납부하고 논문의 첫장 하단에 지원관계를 기재한다.
(※ 연구자는 연구지원비 수혜 관련 기재에 대해 편집 1차 교정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③ 기본 원고분량 15쪽(참고문헌포함)은 기본 게재료 70,000원을 납부하고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인쇄 쪽당 10,000원씩 추가 게재료

를 납부해야 한다.

- ④ 게재된 원고의 별쇄본 5부는 무료로 제공한다.

제8조 (논문 투고료 및 게재료)

- ① 논문 투고 시 60,000원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단, 재심사를 하는 논문의 경우 심사료 20,000원을 추가로 납부한다.
- ② 게재 확정된 논문의 게재료는 70,000원을 연구비 수혜논문의 경우 추가 게재료 포함 140,000원을 납부한다.
(※ 단, 향후 등재후보지 등록 시 기본 원고분량 15쪽 초과 시 쪽당 10,000원씩 추가 게재료를 지불해야 한다.)

제9조 (표절)

게재된 논문이 표절 및 중복 게재인 경우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 관리지침 제3장 제9조(2007, 5)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조치에 응해야 한다.

제10조 (편집위원회 구성)

- ① 편집위원회는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 임원진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 편집위원장 1인과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임원진에서 승인한 10인 내외에서 편집부위원장 1인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부위원장, 편집위원은 전국적인 대표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원고접수, 논문 심사위원 위촉, 논문 심사 결과 확인 및 통보, 논문 수정확인 등 학회지 발간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③ 편집위원회 임원은 교육학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전공 영역에서 전문성과 연구 업적이 뛰어나고 대학 교수-학습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학자로 임명한다.
- ④ 편집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논문심사 및 발간)

- ① 논문 발간은 6월 30일 / 12월 31일 연 총 2회이다.
- ② 투고 마감 후 10일 이내에 각 투고논문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 3인을 선정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 심사위원은 교육학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연구 업적이 뛰어난 학자로 위촉함)
- ③ 선정된 심사위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
 - 논문주제의 명확성 및 독창성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의 타당성
 - 연구문제의 적절성
 - 연구방법의 타당성 및 신뢰성
 - 연구결론, 논의 및 제언의 객관성과 논리성
 - 연구결과의 학문적, 사회적 기여도
 - 문장 기술의 논리적 전개 및 적절성
 - 관련 문헌 및 자료 분석의 정확성 및 충실성
- ④ 심사결과는 3명의 심사위원의 판정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하여,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종합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재심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게재가
게재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가
게재가	수정후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게재가
게재가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재가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게재가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종합판정
수정후게재가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가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 게재가 : 논문의 가치가 탁월하고, 본 학술지의 목적에 부합하며, 투고규정을 충실하게 이행한 논문
 - 수정 후 게재가 : 논문의 가치가 우수하고, 본 학술지의 목적에 부합하나, 부분적인 수정·보완이 요구되며 그 이행 사항을 저자에게 위임할 만한 논문
 - 수정 후 재심 : 논문의 가치가 인정되고, 본 학술지의 목적에 부합하나, 상당한 정도의 수정·보완이 요구되며, 그 이행 여부를 심사자가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논문
 - 게재불가 : 논문의 수준이나 내용의 성격이 본 학술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논문
- ⑤ 3명의 논문심사 결과 내용은 최종 판정결과와 함께 투고자에게 안내하며,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결과 안내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제기서와 함께 제출한다.
 - ⑥ 투고자와 동일 근무지 소속인은 심사자에서 배제한다.
 - ⑦ 논문초록의 질적 평가 및 수정 전후의 내용을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하고 필요시 재수정 혹은 게재보류의 최종 심사결과를 논문 투고자에게 알린다.
 - ⑧ 투고한 논문의 심사결과가 수정후 재심으로 판정이 되었을 경우, 투고자가 수정 기한 내 수정본을 제출하지 않을시 게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게재불가 처리한다.
 - ⑨ 투고된 논문의 심사결과가 게재가능으로 판정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후에 원고가 표절, 기 발표된 논문의 중복, 심사결과 미반영, 기타의 사유로 게재가 불가하다고 판정될 때에는 편집위원

회에서 게재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⑩ 논문 목차 순서는 투고 신청 접수 순으로 한다.
- ⑪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논문 제출자와 심사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

제12조 (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것은 편집위원회 의결사항으로 한다.

제13조 (효력발생시기)

본 규정은 11권 1호(2018년 9월 30일 발간)부터 적용한다.

부 칙

- (1) 본 규정은 2018년 07월16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개정규정은 2019년 01월30일부터 시행한다.

대학 교수-학습 연구 논문작성 요령

1. 논문작성

- 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에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漢子로 표시하거나 ()속에 원어를 써넣는다. 외국인의 인명은 원어 그대로 쓴다.
- 나. 원고분량은 가로 80열, 세로 32행으로 작성한 원고 20쪽 이내(참고문헌 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 제목 다음 부분에 국문초록을 제시하고 참고문헌 다음에 영문초록을 제시한다. 가로 80열, 세로 10행 이내로 작성하고 말미에는 주제어(Key words)를 선정하여 정리한다.
 - ※ 국문, 영문 주제어는 5개 내외로 작성하며, 국문초록 및 영문초록의 경우 반드시 10줄 이상 작성한다.
- 라. 글꼴은 신명조, 글자크기 11, 들여쓰기 2, 줄간격 160, 장평 100, 자간 0 여백주기 : 사용자정의에서 위/아래 20, 좌/우 30, 머리말 / 꼬리말 15로 설정한다.

2. 제목의 번호 붙임

- 가. 1단계 : I, II, III ... (신명조, 글자크기 15, 진하게, 가운데 정렬, 띄어쓰기 위아래 1줄)
- 나. 2단계 : 1, 2, 3... (신명조, 글자크기 13, 진하게, 좌로 1칸 양쪽 혼합, 띄어쓰기 위아래 1줄)
- 다. 3단계 : 가, 나, 다 ... (신명조, 글자크기 11, 연하게, 좌로 3칸 양쪽 혼합)
- 라. 4단계 : 1), 2), 3) ... (신명조, 글자크기 11, 연하게, 좌로 5칸 양쪽 혼합)

마. 5단계 : 가), 나), 다) ... (신명조, 글자크기 11, 연하게, 좌로 7칸 양쪽 혼합)

3. 세부사항

가. 제목의 글자크기, 진하기, 글꼴, 정렬 방식은 단계마다 아래와 같이 한다.

- 논문 전체 제목 : 글자크기 20, 신명조, 진하게, 가운데 정렬
(영문 초록 부분 영문 제목 : 글자크기 20, 신명조, 진하게, 가운데 정렬)
- 제출자 성명(소속) : 글자크기 11, 중고딕, 오른쪽 정렬
- 논문 소제목 : 제목의 번호 붙임 참조
- 국문초록 : 글자크기 10, 신명조, 들여쓰기 2, 문단여백 왼쪽 4, 문단 여백 오른쪽 4, 줄간격 160%
- 영문초록 : 글자크기 10, 들여쓰기 2, 문단여백 왼쪽 4, 문단 여백 오른쪽 4, 줄간격 160%

나.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저자(교신저자 포함)와 공동저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학회지상에 저자를 소개하는 경우에 별도로 적시된 사항이 없으면 가장 먼저 소개된 저자를 제1저자 및 교신저자로 한다.

4. 인용

인용하는 내용이 짧은 경우에는 본문 속에 기술하고, 긴 경우(3행 이상)에는 본문에서 따로 떼어 기술한다. 따로 기술하는 경우에는 인용 부분의 아래 위를 본문에서 한 줄씩 비우고 각각 3글자씩 들여 쓴다.

5. 각주와 후주

가. 각주(脚註, footnote)의 사용은 금하고 그 대신 후주(後註, endnote)를 사용한다.

나. 후주는 본문에 표시하기 어려운 보충적인 내용이나 설명에 한하

여 사용하고, 단순히 자료의 출처나 참고문헌을 밝히는 후주의 사용은 금한다.

- 다. 후주를 표시하는 위치는 해당 문장이나 용어 말미의 윗편에 일련번호로 표시하고, 후주의 내용은 논문 말미 참고문헌을 제시하기 전에 일괄적으로 신는다.

6. 표와 그림

- 가. 표와 그림에는 일련번호를 붙이되, 표에는 <>, 그림에는 []과 같은 괄호를 사용하고, 표의 제목은 상단에, 그림의 제목은 하단에 제시한다.

- (예) <표 1>, [그림 1]

※ 표, 그림은 제목은 가운데 신명조, 글자크기 10으로 한다.

- 나. 표와 그림은 원본 그대로를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만들어 제출한다.

7. 본문 내의 인용문헌

- 가.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발행 연도, 또는 발행 연도와 해당 면을 표시한다.

- (예 1) 이 문제에 관하여 홍길동(2001)은. . .

- (예 2) 홍길동(2001: 15)은. . .

- 나.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 말미에 괄호를 하고 그 속에 저자명과 발행 연도, 해당 면등을 표시한다. 참고문헌이 여럿일 경우에는 문헌들 사이를 쌍반점(;)으로 가른다.

- (예 1) . . .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홍길동, 2001: 18).

- (예 2) 한 연구(홍길동, 2001; Anderson, 1999)에 의하면. . .

- 다. 저자가 다수일 경우 3인까지는 모두 표시하되, 4인 이상은 첫번째 저자만 나타내고 그 이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 (국문) 홍길동 외(2001)

- (영문) Anderson et al.(2000)

8. 참고문헌 작성

가. 논문의 말미에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제시한다. 여러 나라 문헌을 참고했을 경우 韓·中·日·西洋書 순으로 열거한다. 여기에 예시한 이외의 서양 참고문헌의 작성법은 대체로 APA 양식을 따른다.

- 1) 단행본의 경우: 책 이름은 진하게 한다.
 - 홍길동(2001). **창의력**. 서울: 공공출판사.
 - 홍길동·김기동(2001). **창의력과 평가**. 서울: 공공출판사.
- 2) 정기간행물 속의 논문의 경우
 - 홍길동·김기동(2001). 열린교육 평가를 위한 연구. **교육학연구**, 39(2), 143-166.
- 3) 학위논문의 경우
 - 홍길동(2000). 기독교 신앙 행동의 측정과 분석. 박사학위논문. 한국대학교.
- 4) 편저 속의 논문의 경우
 - 이상호(1998). 아비투스과 상징질서의 새로운 사회이론. 문화와 권력: 부르디외 사회학의 이해. 현택수(편), 121-161.
- 5) 학술발표회 발표논문의 경우
 - 최상진(1999). 문화심리학: 그 당위성, 이론적 배경, 과제 및 전망. 한국심리학회 하계심포지움 문화와 심리학, 1-20. 8월 20일. 서울: 연세대학교 제 2인문관.
- 6) 신문기사의 경우
 - 동아일보(2001. 9. 23). 사이버 대학 1학기 수강생 10명 중 8명 꼴 재등록. 19면.
- 7) 전자 매체, URL 등 인터넷 간행물의 표기
 - 인터넷에서 정보를 인출한 경우 자료 원천의 이름과(혹은) 주소를 적은 후 인출한 날짜의 연월일을 구분하여 적고 “...에서 인출”이라고 적어 문장을 끝낸다. 반드시, URL과 인출한 날짜를 기입한다.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2001, August 1). APA

style for electronic resources.

<http://www.apastyle.org/styleeleceref.html>에서 2001. 9. 5 인출.

- 인터넷의 비정기간행물 문서의 경우 날짜가 명기되지 않고 일반 기관에서 게시한 인터넷 문서가 여러 페이지로 구성되었을 때는 그 문서가 들어간 홈페이지(혹은 첫 화면)로 연결될 수 있는 URL을 적어주고 작성 일자가 없음을 “작성일 불명”(영어는 no date를 나타내는 축약어 n.d.로 표기)이라고 명시한다. 문서작성자를 확인할 수 없는 문서는 그 문서의 제목을 저작자명으로 간주하여 제시한다.

GVU's 8th WWW user survey.(n.d.).

http://www.cc.gatech.edu/gvu/user_surveys/survey-1997-10에서 2000. 8. 8 인출.

- 8) 기타(온라인 포럼, 토론 및 온라인상에서 읽은 일간지 기사 등)
- 이정모(2000. 12. 24). 과학도로서의 심리학도의 자세/신조. <http://www.koreanpsychology.org> 회원 광장 사이버특강에서 2001. 10. 3 인출.
 - 한국일보(2001. 10. 12). 생명의 비밀 상자-계놈. <http://www.hankooki.com>에서 2001. 10. 12 인출.

나. 영문 참고문헌 작성 시 유의 사항

1) 책명은 이탤릭체로 할 것

- McMillan, J. H.(2001). *Classroom assessment: Principles and practice for effective instruction*(2nd Ed.). Boston: Allyn and Bacon.

2) 논문 제목은 첫 단어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쓸 것(단행본의 경우도 동일). 단, 정기간행물의 명칭은 각 단어를 대문자로 표기할 것.

- Brookhart, S. M., & Freeman, D.J.(1992). Characters of teacher candidate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2(3), 37-55.

- Airasian, P. W.(1991). Classroom assessment. N.Y: McGraw-Hill.
 - Gold, N. C.(1981). Meta-evaluation of selected bilingual education projec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 3) 여러 사람이 쓴 글을 편집하여 펴낸 책에서 한 논문을 참고하였을 때는 아래의 방식을 따라 표기할 것.
- Wells, A. S.(1996). African-American students' view of school choice. In Fuller, B., Elmore, R., & Orfield, G.(eds.), Who chooses? Who loses? Culture, institutions, and the unequal effects of school choice.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4) 번역서 혹은 편역서의 경우 원저자명 뒤에 본문에서 인용한 번역서의 출판 연도를 괄호 안에 제시하고 번역서명을 적을 것. 원전의 제목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대괄호를 이용하여 원전의 제목을 표기하고 이어서 괄호로 묶어 역자명을 적고 “역 혹은 편역”으로 번역서임을 표시하고 마침표를 할 것. 그리고 번역서의 출판지와 출판사를 적고, 그 뒤에 원전의 출판 연도를 괄호를 묶어 제시할 것. 그러나 본문에서는 괄호 안에 원저자명을 적고 원전의 출판 연도와 번역서의 출판 연도를 빗금(/)으로 구분하여 나란히 표기할 것[예: Bowles, S., & H. Gintis(1976/1986)].
- Bowles, S., & Gintis, H.(1986). 자본주의와 학교교육[Schooling in capitalist America: Educational reform and the contradictions of economic life]. (이규환역). 서울: 사계절. (원전은 1976에 출판)
- 다. 영문 외 참고문헌은 해당 국어와 영문을 병기한다. 한글 참고문헌도 아래와 같이 한글과 영문을 병기한다.
- 1) 단행본의 경우
 - 오옥환(2005). 교사전문성. 서울: 교육과학사.
 - (Translated in English) Oh, W.H.(2005). Teacher professionalism. Seoul: Educational Science.
 - 2) 정기간행물 속의 논문의 경우(반드시 해당 페이지를 밝힐 것)

- 김경근(2008). 한국사회의 대안교육 수요 결정요인. 한국교육학연구, 14(1), 45-69.
(Translated in English) Kim, K.K.(2008). Determinants of demand for alternative education in Korea.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14(1), 45-69.
 - 3) 학위 논문의 경우
 - 김정숙(2006). 여자 대학생의 직업인식과 직업선택 과정.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Translated in English) Kim, J.S.(2006). Occupational perceptions and choices of female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 4) 인터넷 자료를 인용한 경우
 - 이종재(2003). 교육행정시스템 혁신의 방향.
<http://www.kedi.re.kr>에서 2003. 08. 26 인출.
(Translated in English) Lee, C.J.(2003). Directions of innovation on educational administration system. Retrieved August 26, 2003, from <http://www.kedi.re.kr>
 - 5) 신문기사 자료
 - ○○신문(2008. 10. 22). ‘학생 자살’ 예방교육 실시. 4면.
(Translated in English) Teachers advised on teen suicide(October 22, 2008). ○○Newspaper, pp.4.
- 라. 영어논문 작성 양식
- 영어논문의 작성 양식은 the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the 5th edition)에 따른다. 논문 분량은 6,000단어 이내(A4 20쪽 내외)로 하며, 초록은 200단어 내외로 작성한다.

대학 교수-학습 연구 윤리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학 교수-학습 연구 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검증과 조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대학 교수-학습 연구]에 투고되어 게재 확정된 연구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 ② 변조 :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③ 표절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⑤ 중복 게재 : 동일한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결과에 기초한 연구

물을 [대학 교수-학습 연구]이외의 발표 경로를 통해 기 발표한 행위

- ⑥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⑦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4조(기능)

위원회는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 편집위원회에서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①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 ②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 ③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④ 연구윤리 위반 검증, 검증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⑤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⑥ 기타 연구 윤리 확립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5조(구성)

- ①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은 편집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과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 한다.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임기와 동일하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6조(회의)

-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판결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 ⑤ 조사대상 연구에 관련된 위원은 해당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자 윤리)

대학 교수-학습 연구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윤리는 각 항과 같다.

- ① 편집위원회와 전문심사자는 대학 교수-학습 연구의 논문 심사 및 편집 규정을 준수한다.
- ② 심사를 의뢰할 때는 연구자와 재정적, 경쟁적, 지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전문심사자에게 의뢰한다.
- ③ 전문심사자는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연구물을 심사의뢰 받았을 때 편집위원회에 심사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한다.
- ④ 전문심사자는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기한 내에 공정하게 심사하고 평가의견에 대해 학술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 ⑤ 편집위원회와 전문심사자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면 심사대상 연구물에 대한 비밀을 준수한다.

제9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① 제보자는 대학 교수-학습 연구 편집위원회에 직접 또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를 첨부하여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또는 연구과제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는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 ②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편집위원장은 연구 윤리 위원회를 소집한다. 단 제보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도 제보의 기록을 1년간 남기되 반드시 비밀보장이 되도록 한다.

제10조(연구윤리위반 검증 시효)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다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윤리 검증 원칙)

- ①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본 학회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 ③ 본 학회의 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예비조사)

- ①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

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 ②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이전에도 본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예비조사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 ④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3조(본 조사)

- ① 본 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진행한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③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판정)

- ① 판정은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화하여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제기 시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한다.

제15조(결과 통지 및 이의제기)

- ①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 ② 결과에 불복할 경우, 제보자 또는 해당연구자는 각각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재조사 요청 내용을 토대로 성실히 재조사 한다.

제16조(후속조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연구 부정행위 판정을 내릴 경우 각 항의 조치를 취한다.

- ① 해당 연구물의 게재취소: 이미 출판된 경우, 차기 학술지와 학회 홈페이지에 저자명, 논문명, 논문 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사유를 공지한다.
- ② 게재 취소된 연구물은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사이버출판 목록에서 삭제한다.
- ③ 해당 연구자의 학회회원 자격을 3년간 박탈하며, 해당기간 동안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 ④ 제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 제보를 했을 경우 그 과중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가 회원자격의 정지 또는 박탈의 제재를 할 수 있다.

제17조(명예회복에 대한 후속조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연구 부정행위 없음의 판정을 내릴 경우, 해당 연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부 칙

제1조(개정 및 폐지) 본 규정의 개정 및 폐지는 [대학교육개발센터 협의회 편집위원회] 임원진의 심의에 의해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